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66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저출산”이라는 용어를 “저출생”으로 함(안 제2조 등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“저출산”을 각각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4호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<u>저출산</u> 인식개선 정책”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·관·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, 행사, 홍보 등을 말한다.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제8조(중장기 기본계획) ① 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<u>저출산</u>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<u>저출산</u>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</p> <p>2. 3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저출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중장기 기본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저출생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저출생</u> ----- 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|

4. 그 밖에 저출산 대응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

③ (생략)

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업·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시민, 기업, 공공기관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 등의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4. ----- 저출생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저출생 -----
-----.

제11조(기업·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-----

--- 저출생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교육 및 홍보) ① -----
---- 저출생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포상)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

제13조(포상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 저출생 -----
